

지정번호: 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:

4. 지정조건:

「조경진흥법」 제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